

예 산 총 칙

2018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71,431,720	11,142,952
일반회계	329,632,912	9,888,987
특별회계	41,798,808	1,253,964
공기업특별회계	11,384,024	341,521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1,384,024	341,521
기타특별회계	30,414,784	912,444
수질개선 특별회계	12,891,950	386,759
주택사업 특별회계	4,025,230	120,757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654,280	19,628
자활기금 특별회계	1,802,086	54,063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9,105,365	273,161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763,559	22,907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459,074	13,772
기반시설 특별회계	32,529	976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680,711	20,421

제 2 조 세입 및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및 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665,211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복구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